

워싱턴 주 피어스 카운티 타코마 시법원

타코마 시

원고,

대

피고.

번호 _____

**STATEMENT OF DEFENDANT ON SUBMITTAL
OR STIPLUATION TO FACTS**

양도 또는 사실 합의에 대한 피고의 진술서

본인은 이 사건에 피고인입니다. 본인은 기록상으로 이 사건을 제출하고 싶습니다.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판사님이 경찰 보고서와 다른 자료를 읽고 그 증거에 근거하여, 판사가 본인이 이 범죄(들)에 유죄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.

본인은 이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헌법상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: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, 증인의 증언을 듣고 심문 할 권리, 본인을 위하여 증인을 부를 권리, 증언할 권리 또는 증언하지 않을 권리.

본인은 이 범죄에 최고 형량이 _____ 그리고 판사는 검찰이나 피고측이 권고하는 것과 상관없이 최고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.

다음 조치를 취하거나 권고하겠다는 검찰 당국의 약속 외에는 아무도 이 사건을 제소하도록 위협하거나 약속하지 않았습니다.

내가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, 주법에 따라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미국 법률에 따라 추방, 미국 입국 배제 또는 귀화 거부의 근거가 됩니다.

날짜: _____

피고 서명

워싱턴 주 타코마에서 서명함

시 검사 WSBA# _____

피고 변호사 WSBAWSBA# _____